

조세지원체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김영일
극동정보대학 경영과 조교수
E-mail: kyid@chollian.net

이은하
극동정보대학 경영과 겸임교수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인세제 하에서 기업규모와 기업특성 및 조세지원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부담의 차이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을 하고자, 상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효법인세율로 측정되는 조세부담의 차이가 기업의 규모 및 업종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를 설명하였으며,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와 기업특성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 다음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조세지원에 따른 세액공제가 법인의 조세부담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입증한 결과이며,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셋째, 제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도 어느 정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으로 조세지원제도는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인세부담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인(수출, 투자, 증자 등)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익금산입이나 손금산입등의 세무조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점, 또한 단일연도의 자료만을 이용한 점등을 그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

I. 서론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조달을 그 목적으로 하나, 그 이외에 소득재분배, 부동산투기의 억제 또는 국가경제의 성장·발전 등의 부차적 목적도 갖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조세는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어왔으며, 1980년대 세제운용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민간 경제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지만, 아직도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감면이 조세의 공평성(tax equity)과 중립성을 저해하고 누진과세구조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조세지원의 방향이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촉진 및 기술개발과 창업에 대한 지원 등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세제상의 혜택을 보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사이에는 실질적인 조세부담에서 더욱 차이가 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 법인세제 하에서 기업규모와 기업특성 및 조세지원에 따라 기업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효법인세율로 측정되는 기업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차이가 기업의 규모별과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법인의 조세부담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규정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과 계산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 ① 각 사업연도 소득
=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 ②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 소득 - 소득공제
- ③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④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⑤ 부담세액

= 결정세액 + 특별부가세 + 주민세 + 농어촌특별세

1.1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총익금)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총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법인세법 9조①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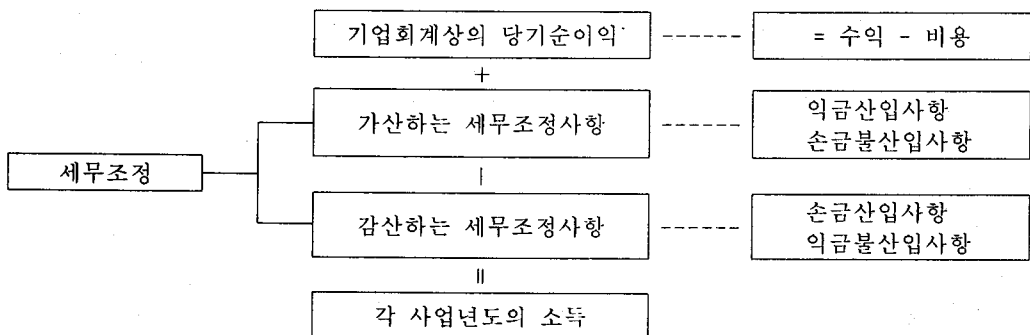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은 그 목적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손익의 가감조정(세무조정)을 거쳐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한다.

1.1.1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

1.1.1.1 익금산입

법인세법상 “익금은 사업연도 중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에서 자본 또

<그림 1> 세무조정도



는 출자의 납입과 법인세법에서 익금불산입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수익금액을 말하며(법인세법 9조②항), 법인세법에 규정된 익금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회계상 수익인 항목으로서 사업수입금액,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임대료,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이익,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을 열거하고 있으며 둘째,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닌 항목으로서 자산의 평가차익,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유가증권 저가매입액, 간주임대료, 의제배당 등과 기타수익을 열거하고 있다.

1.1.1.2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비이기는 하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이나 간접적인 규제를 통하여 비용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의 총손금에서 제외되는 거래를 말한다.

손금불산입사항을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익처분에 관련된 것으로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배당건설이자, 주식할인발행차금.

둘째, 인건비에 관한 것으로 비상근임원보수 중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액, 노무출자사원보수, 임원상여금중 급여지급 규정상의 한도초과액,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셋째, 조세공과금에 관련된 것으로 법인세비용, 재평가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간접세, 토지초과이득세, 비업무용 토

지에 대한 취득세 증과분, 법령에 정한 공과금.

넷째,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다섯째, 법령위반·의무불이행에 관련된 것으로 벌금·과료, 과태료, 징수불이행세액,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여섯째, 소비성경비로 접대비 한도초과액, 기부금 한도초과액, 소비성 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 업무무관경비.

일곱째, 이자비용으로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비실명채권과 증권의 이자, 기준초과차입금 관련이자, 타법인주식 등 관련이자, 비업무용 부동산 등 관련이자.

여덟째, 기타 항목으로 법 소정 자산 이외의 평가차손, 보험업 영위 법인의 배당준비금 한도초과액과 예정사업비 한도초과액 등을 열거하고 있다.

1.1.2 손금산입과 익금불산입

1.1.2.1 손금산입

법인세법상 손금은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 9조 ③항). 손금은 기업회계상 비용과 같이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등의 구분이 필요 없으며, 기업회계상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순자산 감소액을 포함하기도 한다.

법인세법상 손금항목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산과 비용으로 적절히 배분하여야 한다.

1.1.2.2 익금불산입

익금불산입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기는 하나 그 거래의 성질이 자본거래로서 과세하기에는 부적당한 것과 조세정책목적 등에 비추어 직접적인 과세를 피하기 위한 것 등을 이유로 법인의 총익금에서 제외되는 거래를 말한다.

익금불산입항목을 그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식발행초과액, 감자차익, 합병차익(자산의 평가차익은 제외한다),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둘째,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이월익금, 법인세와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의 환급액, 토지초과이익득세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증과분의 환급액.

셋째, 부채성격으로서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넷째, 조세 정책적 목적에서의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 이자, 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 법인으로 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90% 등을 들 수 있다.

1.2 과세표준의 계산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과 세법에서 규정된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된다.

1.2.1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상 전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하지 못하고 당사업연도로 이월된 결손금을 말한다(법인세법 9조①항).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상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법인세법 8조①항).

첫째, 결손금은 대차대조표상 결손금과 세무상 결손금중 세무상 결손금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하므로 대차대조표상 결손금은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만을 과세하므로 결손금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다.

둘째,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것만 공제된다. 공제기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하나,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하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다.

셋째, 미공제된 이월결손금만 공제대상이 된다. 이 경우 공제되었다는 것은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었거나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를 말한다.

1.2.2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이란 조세정책상 국가가 처음부터 과세권을 포기한 소득을 말한다.

현행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이 있다.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가 소정의 목적을 위하여 동 재산권을 관리·운영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데, 이러한 신탁 중에서 학술·종교·제사·자선·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공익신탁이라 한다.(법인세법 10조)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조세감면규제법 12조, 동법시행령 14조4).

둘째,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조세감면규제법 13조, 동법시행령 13조3).

셋째,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 합의하여 인정하는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조세감면규제법 40조, 동법시행령 37).

1.2.3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법 소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법인세법은 소득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사업소득공제·축산업소득공제·증자소득공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사업소득공제로서 해외건설업과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산업설비 수출사업이 공제대상이 되며 외화수입금액의 2%와 외화획득사업소득금액의 50%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조세감면규제법 20조).

둘째, 축산업소득공제로서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20%를 공제하며 축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후 3년간 공제한다(조세감면규제법 96조, 동법 시행령 92조).

셋째, 증자소득공제로 중소기업이 1997.1.1부터 1998.12.31까지의 기간 중에 개인, 외국법인, 법 소정 내국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가 공제대상이며 공제금액은 증자금액에 연 10%를 공제하되,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은 5%를 추가 공제한다(조세감면규제법 93조, 동법 시행령 89조).

1.3 결정세액의 계산

1.3.1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조세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산출세액에서 법 소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로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에 규정되어 있다.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두 가지가 있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는 투자세액공제와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로서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며 또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이 된다.

1.3.2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중소기업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 등의 목적에서 여러 가지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조세감면규제법 46, 50, 51조, 동법시행령 44, 46, 48조). 조세감면은 감면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일정액(20%, 30%, 50%)의 세액을 경감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조세감면제도는 사업단위별 감면과 그 이외의 감면으로 나누어진다. 사업단위별 감면이란 창업중소기업·중소제조업·지방이전기업·농공단지입주기업 등 특정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단위별 감면이 아닌 경우는 자산양도차익·투자배당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과 같이 특정사업에 대한 감면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1.3.3 가산세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2조). 법인세법에서는 무기장·무신고가산세, 과

소신고가산세, 미납부가산세,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대차대조표 무공고가산세,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계산서 불성실가산세등을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41조).

1.4 부담세액의 결정

법인의 부담세액은 결정세액에서 특별부가세와 주민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1.4.1 특별부가세

특별부가세는 법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의 일종이다.

현행 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한 손익의 측정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 등의 양도차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구성하므로 법인세가 부과되는 한편, 다시 특별부가세가 부과됨으로써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되는 결과가 된다.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세율은 등기자산인 경우에는 20%이며, 그 이외는 40%이다(법인세법 59조 67, 동법 시행령 124조 10).

1.4.2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두거나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소득을 얻은 개인과 법인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써, 균등할과 소득할로 구분되는데 균등할은 다시 개인균등할과 법인균등할로, 그리고 소득할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지세할로 구분된다(지방세법 173조, 동법 시행령 130조 2).

1.4.3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세로서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중요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은 조세정책적인 목적에 의하여 감면한 것이므로 그 감면받은 조세의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농어촌특별법 3조, 동법 시행령 3조).

2.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국가가 특정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의 경제활동이나 특정기업에 대하여 세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로써(윤건영, 임주영, 1993),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직접감면방식과 간접감면방식으로 나누며, 정부주도형 경제성장과정에서 감면제도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직접감면방식은 법인세액 또는 과세소득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조세지원제도로써 세액공제, 세액감면(면제), 소득공제 등이 있다. 간접감면방식은 법

인세 납부시기를 연기시키는 조세지원제도로써 특별상각, 준비금의 손급산입 등이 있다.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과 제조업종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자본과 정보, 인력과 자원면에서 열악한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육성발전시키고자 마련된 주요한 조세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¹⁾

2.1.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농공단지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정읍제2·제3산업단지, 대불산업단지, 북평국가산업단지, 북평지방산업단지(1995. 1. 1이후 최초 입주자부터 적용한다)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내 종료되는 과세연도의 소정의 법인세를 감면한다(조세감면규제법 50조, 동법 시행령 48, 49조).

2.1.2 지방이전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1999. 8. 31까지 수도권외의 공장시설(본

1) 산업자원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알기쉬운 중소기업 지원제도" 산업자원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0.

점·주사무소 포함)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이전일 이전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 부터 3년은 소정의 법인세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감면한다(조세감면규제법 46조, 동법 시행령 46조).

2.1.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법인이 제조업 또는 광업으로 사업을 전환한 후 당해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사업전환 후 최초로 소득 발생연도와 그 다음 5년간은 소정의 법인세를 감면한다(조세감면규제법 34조, 동법 시행령 31조).

2.1.4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

<표 1> 참조

2.1.5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

소기업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소정의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세감면규제법 7조, 동법시행령 7조).

2.2 제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제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 지원 등 특정목적의 지원제도에서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제조업에 관련되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1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기술개발준비금이란 기술개발 및 혁신을 통하여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기업의 장래에 지출할 기술개발 및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손금으로 계상하는 제도이다(조세감면규제법 8조, 동법 시행령 8조).

2.2.2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조·광업, 건설업·엔지니어링사업·

<표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998.1.1 이후 창업	1999.8.31 이후 창업 벤처기업 확인
다음의 해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 후 5년간 50%감면 ①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② 농어촌외지역 기술집약형 창업 중소기업(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제외) ③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④ 창업보육센터운영기업	다음의 해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발생연도와 그 후 5년간 50%감면 ① 수도권 외 지역 창업중소기업 ② 창업보육센터 사업법인 ③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법인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자의 가공, 조립, 정비 및 연구개발사업, 금융보험업,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기술, 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있는 법인은 경상지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와 증가지출분에 대한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조세감면규제법 9조, 동법 시행령 9조).

2.2.3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등을 내국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기술비법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내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정의 법인세에 상응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세감면규제법

<표 2>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연구자	발견사항	유효세율 정의	자료원과 기간	기타변수
Zimmerman (1983)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의 양의 관계	평균유효세율: 국내의 납부세액/영업현금흐름	COMPUSTAT, IRS SOI자료 1947-1981년	규모:총자산
Porcano (1986)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의 역의 관계	평균유효세율: 미국 납부세액/미국세전이익	Value Line데이터 베이스1982-1983년	규모:자본적지출, 세전이익, 총자산, 총매출액
Wang (1991)	순영업손실을 통한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의 간접관계	평균유효세율: 경제적이익세율, 회계적 이익세율, 매출총이익세율	NAARS 데이터 베이스 1978-1983년	규모:총매출액, 총자산, 순영업손실
조성표 (1990)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의 역의 관계	평균유효세율: 법인세/매출총이익 준조세부담률:(세금과공과+지급수수료+기부금)/매출총이익 총조세부담률:유효법인세율+준조세부담률	상장회사협의회 데이터베이스 1981년-1989년	규모:매출액, 총자산 등
조성하와 정규언 (1992)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의 역의 관계	평균유효세율: 법인세/세전이익, 법인세/매출총이익 기부금비율: 기부금/매출총이익 접대비비율:접대비/매출액 조세공과비율: 조세공과/총자산	한국신용평가 데이터베이스 1981년-1989년	규모:매출액
권순철과 권순창 (1993)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에 역의 관계	평균유효세율:법인세/법인세차감 전순이익 법인세/매출총이익	한국신용평가 데이터베이스 1988년-1992년	규모:매출액, 총자산
노현섭 (1995)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의 역의 관계	9가지: 매출총이익, 세전이익, 경제적 이익을 기본으로 정의하고 이를 다시 수정함	한국신용평가 데이터베이스 1984년-1993년	규모:매출액, 총자산
전규안 (1997)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의 역의 관계	평균유효세율:세제상보조금/자기자본	한국신용평가 데이터베이스 1989년-1995년	규모:매출총이익

11조, 동법시행령 11조).

2.2.5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

2.2.4 임시투자세액에 대한 공제

제조업·건설업·도매업·소매업·전기통신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 자산에 신규투자(중고품투자 제외한다)를 할 경우 투자금액중 소정의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조세감면규제법 27조, 동법시행령 24조).

제조업(노후시설의 개체를 위한 시설투자의 경우 광업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0. 12. 31까지 공장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노후시설의 개체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중 소정의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조세감면규제법 25조, 동법시행령 22조).

<표 3> 기업특성과 조세부담에 관한 연구

연구자	논문의 주요결과	사용된 유효법인세율의 측정치
siegfried (1974)	조세보조금의 불균등한 분포로 인하여 산업별로 유효세율이 차이난다.	1가지:세액공제차감전조세부채/과세소득
stickney McGee (1982)	기업의 규모와 유효법인세율은 상관관계가 없다	1가지:국내외조세/과세소득
siegfried& McGee (1982)	유효법인세율이 낮은 기업이 부채비율이 높다.	1가지:법인세/세전장부상이익
Porcano (1986)	기업규모가 클수록 유효법인세율이 낮다.	4가지:법인세/총매출액, 총자산, 자본적지출, 순이익
안숙찬과 김성기 (1994)	수출비율, 자본집약도, 부채비율기술투자율과 역의관계 규모와는 유의적 관계없다.	6가지중 법인세등/(세전순이익+감가상각비)만을 이용
노현섭과 정문현 (1995)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유효법인세율이 낮다	4가지:(법인세등+다음연도의 추납액-다음연도의 환급액)/매출총이익 법인세등/매출총이익외 2가지 (분모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이용)
안숙찬 (1996)	부채비율과 연구개발투자비율은 유효법인세율과 역의관계, 기업규모와 자본집약도, 수출비율, 이익증가율은 유효법인세율과 관련없다.	2가지: 법인세등/매출총이익 (법인세등+다음연도의 추납액-다음연도의 환급액)/매출총이익
최강득 (1997)	규모(재벌기업:비재벌기업)는 유의한 관계가 없음 자본집약도, 부채비율은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	3가지: 법인세등/매출액 법인세등/당기순이익 법인세등/매출총이익
김용훈 (1996)	기업별로 유효법인세율이 차이가 있다.	1가지:법인세등/법인세차감전순이익

Ⅲ. 선행연구의 검토

국내의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유효법인세율에 관련된 것과 기업특성에 관련된 연구로 나누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유효법인세율에 관련된 연구

<표 2> 참조

2. 기업특성에 관련된 연구

<표 3> 참조

Ⅳ. 연구설계

1. 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유효법인세율을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에 대한 조세의 직접지원체도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세지원체도가 유효한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1 조세지원체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설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조세지원에 대한 혜택은 세액공제 내지 세액감면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세액공제 등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조세부담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기업의 법인세부담율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1.2 기업특성에 대한 연구가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 특히 중소제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세액에서 직접공제를 하여 주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다른 대기업이나 비제조 중소기업들보다 이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조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효법인세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가설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법인세부담율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3> 제조업종의 중소기업과 비제조업종의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율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2. 통계적 분석방법

2.1 조세지원체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설의 검증방법

조세지원체도의 효과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가설 1>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

증한다.

첫째, 검증대상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검증한다. 이는 법인세부담액의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 1억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각각 16%과 28%인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대부분 1억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1억원을 밑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인세부담율에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각각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으로 구분하되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가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 이는 이들 항목이 과세표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때문이다.

셋째, 앞서 분류한대로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의 법인세부담율을 계산한다.

넷째, 기업집단별로 법인세부담율의 평균에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T-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산을 알 수 없기 때문에 T-검정을 사용한다.

2.2 기업특성에 대한 연구가설의 검증방법

기업특성에 관한 <가설 2>와 <가설 3>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증한다.

첫째, 표본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중소기업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한다.

둘째, 기업의 규모별, 업종별로 법인세부담율을 계산한다. 역시 <가설 1>과 마찬가지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

제가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

셋째, <가설 2>의 검증방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법인세부담율에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T-검정을 이용하는 분석한다.

넷째,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법인세부담율을 이용하여 T-검정을 실시한다.

3. 변수의 측정

3.1 유효법인세율

유효세율(ETR)모형은 투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후 순이익률의 분석을 통하여 조세제도가 투자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려는 것으로 196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어 Fullerton(1989)에 의하여 정립된 모형이다.(D.Fullerton, 1984)

Scholes Wolfson(1989)은 법인세 부담을 측정하는데 유효법인세율, 평균법인세율, 한계법인세율 개념을 사용하였다.(Scholes & Wolfson, 1989)

유효법인세율(effective corporate tax rate)은 법인세비용을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으로 나눈 것이며 평균법인세율(average tax rate)은 당기 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의 현재가치를 과세소득의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이며 한계법인세율(marginal tax rate)은 추가적인 과세소득 1원에 대한 당기 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의 현재 가치의 비율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효세율을 측정함에 있어서 분모에 세전 당기순이익을 분자에

총 부담세액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이는 일반적인 유효세율에 관한 정의로서 이를 종속변수로 하고 각각의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검토함에 있어 계량 경제학적인 문제점이 적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TR_i = (1 - \frac{TP_i}{I_i})t$$

여기서 ETR_i : i 기업의 유효세율
 TP_i : i 기업의 조세혜택
 I_i : i 기업의 세전당기순이익
 t : 법정세율

4. 표본의 선정

본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수집하였다.

첫째, 대기업자료는 1998년도 12월말 현재 상장되어 있는 법인 중에서 무작위 추출법을 이용하여 선정된 258개 법인의 사업보고서 상에 '법인세비용 등 명세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중소기업은 세무관서에 1998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중 무작위추출법을 이용하여

선정된 192개 법인의 신고자료를 이용하였다.

둘째, 한국증권거래소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법인과 당기에 법인세납부 실적이 없는 법인을 제외하였다.

셋째, 금융업과 보험업 그리고 리스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법인은 제외하였다.

넷째, 결산일이 12월 31일이 아닌 법인은 제외하였다. 12월 말 결산법인만으로 표본을 한정하는 것은 표본의 동질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상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법인들의 자료를 요약해 보면 <표 4>와 같다.

표에서 보면 자료의 입수가 가능한 상장법인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대기업이 258개 기업이었으며, 중소기업의 수는 192개 기업이었다. 그리고 대기업 중에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은 기업은 192개였으며 중소기업은 제조업 125개, 비제조업 67개이고 이중 세액공제나 감면혜택을 받은 기업은 각각 101개, 11개 기업이었다.

<표 4> 표본기업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제조업	비제조업	소계	
업종**					
전체 기업수	258	125	67	192	450
세액공제 기업수***	192	101	11	112	303

*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함,

** 대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영역이 다양하여 업종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조업이 아닌 경우 이를 모두 비제조업으로 분류함

***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비용 등 명세서' 상에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이 있는 기업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 상에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이 있는 기업이다.

V. 검증결과 및 해석

1. 기술적 통계량

1.1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부담율

<표 5>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받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각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법인세부담율을 계산한 것이다. 여기서 산출세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을 가산하고 손금산입과 익금불산입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또한 세액공제는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비용 등 명세서”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금액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합산한 금액이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구분하지 않은 것은 표본자료에서 이를 별도로 구분하기가 어려웠으며 또한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법인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체의 법인세부담율을 보면 대기업의 경우

30.80%로 중소기업의 23.48%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기업에서도 대기업의 법인세부담율이 중소기업의 법인세부담율보다 각각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세액공제를 받는지 여부에 따른 법인세부담율을 보면 대기업의 경우 29.19%와 35.76%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21.05%와 26.87%로 모두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의 법인세부담율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기업의 법인세부담율보다 작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나 산출세액, 부담세액 각각의 항목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큰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규모(매출이나 자산 또는 이익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2 기업특성에 따른 조세부담율

<표 6>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표 5> 세액공제의 여부에 따른 조세부담율

(단위 : 백만원)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세액공제 기업	세액불공제 기업	전체	세액공제 기업	세액불공제 기업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44,372	54,091	14,443	1,351	1,640	1,003
산출세액	12,290	15,004	3,935	346	414	264
세액공제	2,302	3,049	0	49	87	0
부담세액	11,229	13,440	4,421	338	364	314
법인세부담율	30.80%	29.19%	35.76%	23.48%	21.05%	26.87%

<표 6> 기업특성에 따른 조세부담율

(단위:백만원)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제조업	비제조업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44372	1351	1,432	1,200
산출세액	12290	346	340	356
세액공제	2302	49	69	12
부담세액	11229	338	307	396
법인세부담율	30.80%	23.48%	20.55%	28.94%

중소기업 중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법인세 부담율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요약한 것이다. <표 6>에서 각 항목이 의미하는 것은 앞의 <표 5>에서와 같다.

기업규모에 따른 차이는 앞서 살펴 본 대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높은 법인세 부담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20.55%로 비제조업의 28.94%보다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제조업의 법인세부담율이 비제조업의 법인세부담율보다 낮은 것은 제조업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비제조업보다 높은 반면에 세액공제액이 커 부담세액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은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하여 세액공제액 만큼의 조세부담이 경감되므로 조세부담액이 상대적으로 작고 또한 법인세부담율이 작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기업의 법인세부담율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는 조세지원제도가 유효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설을 검증하는데 있어서 종속변수는 법인세부담율이며, 독립변수는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과 받지 못하는 기업의 특성으로 하여 각 집단간의 법인세부담율 차이를 검증한다.

2.1.1 대기업의 경우

2. 가설검증

2.1 연구가설 1의 검증

<가설 1>은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여

<표 7>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과 받지 못한 기업의 법인세부담율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이다. 법인세부담율에 대해 세

<표 7> 가설1의 검정 - 대기업의 경우

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수준
종속변수	독립변수				
법인세부담율	세액공제	29.24	14.39	-2.893	.004
	세액불공제	35.76	18.62		

<표 8> 가설1의 검정 - 중소기업의 경우

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수준
종속변수	독립변수				
법인세부담율	세액공제	21.03	13.53	-3.571	.000
	세액불공제	27.81	16.97		

<표 9> 가설2의 검정

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수준
종속변수	독립변수				
법인세부담율	대기업	30.85	15.75	5.008	.000
	중소기업	23.48	14.95		

액공제를 받은 기업(29.24)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기업(35.76)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부담율에 차이가 존재하며 조세지원제도가 유효하다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법인세 세액공제가 유효하다는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의 발표와 일치한다.²⁾

2.1.2 중소기업의 경우

<표 8>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액

공제를 받은 기업과 받지 못한 기업의 법인세부담율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이다. 법인세부담율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21.03)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기업(27.81)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부담율에 차이가 존재하며 조세지원제도가 유효하다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2.2 연구가설 2의 검증

<가설 2>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종속변수는 법인세부담율이며 독립변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하여 분석한 것이다. <표 9>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법인세부담율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이다. 법인세부담율에 대해 대기업(30.85)이 중소기업(23.4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부담율에 차이가 존재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어느 정도는 유효하다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2)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0년부터 92까지 3년 동안 감면세액은 모두 5조 7,518 억원으로 같은 기간 중 내국세 세수총액인 72조 820억원의 8.0%에 달했다. 조세감면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92년에는 2조 935억원으로 91년 보다 11.1%(2098억원), 91년에는 1조 8,837억원으로 6.1%(1092억원)가 각각 늘어나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감면세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제 및 세무규모 확대에 따라 감면 대상도 증가하고 있고, 특히 법인은 투자세액공제, 개인은 양도소득세 부문에서 감면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부산일보, 1993년 7월 10일, 10면.)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법인세 감면이 급증하고 있으며, 부실기업 정리의 여파가 본격화되었고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 중소기업을 위한 세세 지원책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조선일보, 1992년 11월 4일.)

<표 10> 가설3의 검정

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수준
종속변수	독립변수				
법인세부담율	제조업	20.53	12.31	-3.445	.001
	비제조업	28.94	17.82		

2.3 연구가설 3의 검증

<가설3>을 검증하는데 있어서 종속변수는 법인세부담율이며 독립변수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하여 분석한 것이다. <표10>은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비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법인세부담율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이다. 법인세부담율에 대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20.53)이 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28.94)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부담율에 차이가 존재하며 제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어느 정도까지는 유효하다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V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세액공제의 혜택 여부에 따른 조세부담율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1998년도 상장법인의 “법인세비용 등 명세서”와 중소기업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이는 이들 자료에 세액공제의 혜택여부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액공제의 유효성에 대한 분석은 실제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와 기업규모 그리고 업종으로 구분하여 집단별로 법인

세부담율의 평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의 혜택에 따른 법인세부담율의 차이는 두 집단 모두에서 세액공제가 있는 기업의 법인세부담율이 세액공제가 없는 기업의 법인세부담율보다 유의하게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조세지원에 따른 세액공제가 법인의 조세부담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조세지원제도가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둘째, 세액공제의 여부에 관계없이 기업의 규모별로 법인세부담율의 차이여부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법인세부담율이 대기업의 법인세부담율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어느 정도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법인세부담율의 차이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의 법인세부담율이 비제조업의 법인세부담율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제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어느 정도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우리 나라의 조세지원제도는 그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실제 법인세부담액 즉 세액공제라는 항목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논의 할 때에는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한계점은 미래의 연구방향이 될 것이다.

첫째, 기업규모에 따른 분석에서 법인세부담율에 영향을 주는 세액공제는 기업규모 만이 아니고 수출여부, 투자여부, 증자여부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점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둘째, 법인세부담액의 계산에서 법인세부담액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은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익금산입이나 손금산입 등 세무조정과정의 요소들도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무조정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수집이 어려워 단일 연도의 분석에 머물렀고, 목시적 조세를 포함하지 않는 명시적 조세에만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수 개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권순철 · 권순창, 1993, "상장기업의 유효법인세율에 관한 검토", 「세무학연구」 제 5호, pp.73-94.
 노현섭 · 정문현, 1995,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의 관계 : 정치적 비용가설과 조세혜택 가설의 검증", 「세무학연구」 제6호, pp. 85-114.

박춘래, 장호영, 1994, "최저한세제도의 과세공평성 향상분석", 회계학연구 제 19호.

산업자원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0, "알기쉬운 중소기업 지원제도" 산업자원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광조, 1993, "수익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실증적 고찰—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비교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5호, pp.85-114.

이만우, 1991, "법인세법상 각종 세제혜택의 재무적 효과측정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제21권 제1호, pp.271-294

이용호, 1995, "법인세 유연화 연구", 「회계학연구」 제20호, pp.25-58.

이준규, 1992, "법인세제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법인세 부담율의 측정에 의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전규안, 1996, "법인세부담의 공평성과 기업 특성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춘옥 · 조현연 · 백승산, 1996, "법인세유연화 연구", 「세무학연구」 제6호, pp.63-95.

조달영, 1998, "법인세법 정해", 조세통람사.
 조달영 · 김선호, 1998, "법인결산신고실무" 조세통람사.

조세통람사, 1998, 조세편람 조세통람사.
 주현기, 1993, "조세감면규정을 이용한 법인세 평준화현상", 「세무학연구」 제5호, pp.277-298.

Bernard, V. L., 1984, "A Comment On: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3(Summer), pp. 75-78.

- D. Fullerton, 1984, "Which Effective Tax Rate?", *National Tax Journal* 37 : pp. 23-41.
- Peltaman, S., 1976, "Toward a More General Theory of Regulatio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August, pp. 221-240
- Scholes, M. S. and M. A. Wolfson, 1989, *Taxes and Corporate Financial Strategy: A Global Planning Approach*, New Jersey : Prentice Hall, Inc.
- Shelvin T. J., 1987, "Taxes and Off-Balance-Sheet Financing: Research and Development Limited Partnerships," *the Accounting Review* 62: pp. 480-509
- Sigfried, J. J., 1974, "Effective Average U. S. Corporate Income Tax Rates," *National Tax Journal* June, pp. 245-259.
- Zimmerman, J. L., 1983, "Taxes and Firm Siz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0, pp. 119-149
- Zmijewski, M. and R. Hagerman, 1982, "An Income Strategy Approach to the positive Theory of Accounting Standard Setting/Choic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 pp. 129-149.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ax Assistance System

Young-Il Kim* · Eun-Ha Lee**

Abstract

Tax assistance system in Korea is a one that is design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achieve specific policy objectives through the tax relief for economic activities or specific industries,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ie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if the government's direct tax assistance system for small and medium manufacturing firms is effective and then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necessary policies for an effective tax assistance system based on the identification of a direct assistance system that is substantially useful to those firms.

T- test was performed to see if there was a difference in tax burden between small and medium manufacturing firms and small and medium non-manufacturing firms and also to see whether the direct assistance system was effective.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statistical analyses are as follows:

(1) The tax reduction rule applied to small and medium firms was turned out to be effective based on the fact that the effective tax rates of the small and medium firms to which the rule was applied were, on the averag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the Listing large corporation which did not receive the tax benefit and also on the fact that the tax savings rates of the small and medium firms which could apply the rule were, on the averag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Listing large corporation to which the rule was not applied.

(2) The tax credit rule applied to small and medium manufacturing firms was also turned out effective based on the same fact as described in the case of the application of the tax reduction rule.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KeukDong College

** Adjunct 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KeukDong College